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06,950,484	18,208,515
일반회계	511,828,725	15,354,862
특별회계	95,121,759	2,853,653
기타특별회계	95,121,759	2,853,6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19,599	429,58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68,370	26,051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408,943	12,26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78,925	5,368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6,730,462	201,91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551,618	16,549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39	64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4,552,391	436,572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56,777,991	1,703,340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31,321	21,9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